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양희 (미래창조과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에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)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신설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호에서”를 “제2조제1호차목에서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

제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)의 조정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“영 제2조제7호”를 “영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업의 범위) ①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제2조(사업의 범위) -- 제2조제1호차목에서 ---
1. ~ 7. (생 략)	1. ~ 7. (생 략)
제5조의2(분과위원회)	제5조의2(분과위원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.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
1. ~ 3. (생 략)	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.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)의 조정에 관한 사항
1. ~ 4. (생 략)	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0 - 8126